

(개정규칙안-참조1)

성남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2년 12월 일

발의자 : 김민자의원의외 9인

☐ 제안사유

시의원이 국외출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외 출장에 관한 주요사항을 과반수 이상의 민간인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 하도록 하여 국외출장의 공무 관련성, 투명성, 민주성을 제고 하기 위함.

☐ 주요골자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항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를 삽입함.

☐ 참고사항

- 성남시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 행정자치부 운영13130-529(2001.7.11), 13130-657(2001.8.16), 13130-1043(2001.12.20)공문
- 경기도 기획13130-11531(2001.7.14)공문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설치·운영)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위한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설치·운영) ①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u>위원은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u>

성남시의회규칙 제 호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의회운영위원회위원회 위원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7인 이내로 의장이 위촉하되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대표 2인, 의회 부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 2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2001. 2. 19)
규칙 제10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1 외국 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의원이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은 경우
- 2 3개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의원이 참가하는 경우
- 3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교류 행사를 위하여 의원이 출장하는 경우
- 4 기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

제3조 (여행허가등)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위한 출장은 의장이 명하거나 허가한다.

제4조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①공무 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
- 2 여행국 및 방문기관의 타당성
- 3 여행기간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③예산편성한도액의 범위안에서 10인미만의 의원이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심사위원회의 구성·회의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 (여행계획서의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여행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계획서를 접수한 의장은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 (여행보고서의 제출)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은 귀국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시의회 자료실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성남시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부 칙 (2001. 2. 19 규칙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정자치부

우 110-730 / 서울시 중구 세종로 77-3 / 전화 3703-4855 / 전송 3703-5543
 자치운영과 과장 노동일 사무관 이우중 담당자 이광순

문서번호 은영 13130-1043

시행일자 2001.12.13 (1년)

수 신 성남시의회의회장

참 조

제 목 질의회신

선 발	의 장	3/	지	
결 정	일자	2001. 12. 13	시	
	시간	16:36	결 재	국 장 김성수
수 번	번호	2351		과 장 정종대
처리과			승 인	의정양성 [인]
담당자			람	의정양성
심사자			심사일	

1. 의사13130-619(2001.11.30)호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의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사항

○ 공무국의여행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하
 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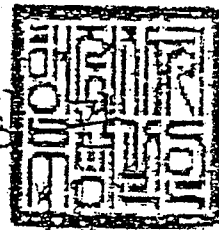
3. 회신내용

가. 지방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의여행규칙」을 제정하고, 국외여행시
 등 규칙에 정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국외여행의 생산성과 효율
 성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등 공무국의여행의 내
 실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나. 그리고,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등 민간위원을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권고한 것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주민에 의해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해 유권자인
 주민들로부터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측면도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끝.

행정자치부장

전결 자치운영과장



수신처

다. 또한 공무원여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단체를 중심으로한 민간위원을 원칙적으로 과반수이상 참여시켜 공무원여행의 타당성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라. 2002년도 지방의회의원 급여에의 예산편성시에는 당해년도에 반드시 끝으로 크게 제한된 범위내의 공무원출장 수를 제의하고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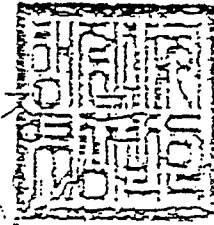
2. 끝으로,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의회에 본 공문을 이송·시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본건과 관련하여 시·도의회 및 관내 시·군·구의회별로 「지방의회의원공무원여행규칙」의 제정·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오니(문영 13133-319, 2001.3.14 참조) 틀림 주소에 의거 2001.3.24 문.자.지.국소 102-3700-43551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의회의원공무원여행규칙」 제정·운영실태 1부.

2. 조례제정 사례(충청남도의회의원공무원출장통에관한조례) 1부, 끝.

행정자치부

전결 자치행정국장



수신처 2001-07. 10-18

공공을 바르세워 일류국가 이룩하자!

행정자치부

우 110-780 / 서울시 중구 세종로 77-5 / 전화 3703-4355 / 전송 3703-5543
 기획조정국 과장 노병일 사무관 전영욱 담당자 이광순

문서번호 문영 13130-529

수령일자 2001. 07. 11

수신 부서 기획조정

발신 부서 기획조정국 인사사무처장

종류	문	지
주제	인사	인사
수신처	인사	인사
처리과		
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경문영 재촉부

1. 관련근거

○ 행정자치부 문영 13130-920(2000.11.2) 호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 개선방안 철폐"

○ 행정자치부 문영 13130-68(2001.2.13) 호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경문영 철폐 결정"

○ 행정자치부 문영 13130-319(2001.5.14) 호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정경문영 철폐 결정 및 문영을 철폐 결정"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우리부에서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을 보면 중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연회폐지

가. 예산편성지침에 관한 지침의 범위내에서 정경예산을 편성하고,

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을 개정하여 시·도·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이 준수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의 필요성, 운영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심사하여 운영계획 수립을 결정하는 등 있음.

3.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행위규정"의 제정을 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공성으로 보이는 공무원행위규정 제정 등에 제정개선방안에 의거하여 효율적인 연회 및 시·도·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감사처 앞으로는 각 시·도의회 및 시·도·자치구의회가 의정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무원 반드시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가.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내실있게 공무원행위를 실시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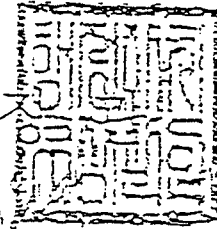
나. "임기중 1년 국외여행을 다녀온 지방의회의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등 「공무국외여행규칙」을 아직도 제정하지 않은 의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토록 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시민단체 대표등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국외여행 심사를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각 시·도에서는 관내 시·군·구의회 사무국(과)에도 이첩·시달하여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시행에 관심을 기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전결 자치행정국장



수신처 201-07 13-15



성 남 시

http://www.songnam-shi.kvonggi.kr

우461-700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

/☎ (031)729-3251

/FAX (031)729-3299

기획예산과

과장 이용중

담당자 최진숙

E-mail : cjs8661@kg21.net

문서번호 기획 13130 - 1475

시행일자 2001. 7. 30. ()

공개여부 (공개)

발문 성남시의회 의장

참조 사무국장

전달	과장	1) 112	지시	
절	일자	2001. 8. 1	결재	과장
수	번호	1321	공발	의결담당
처리과			공발	의결담당
담당자			실사자	
실사자			실사일	2001/8/1

제목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의 적정운영 재촉구공문 통보

1. 행정자치부 운영13130-529(2001. 7. 11)호 및 경기도 기획13130-11531(2001. 7. 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의회의원의 국외여행제도 개선방안의 적정운영 재촉구공문을 별첨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관련 촉구내용

가. 지방의회의원 국외여행 규칙제정 및 실사위원회내의 내실운영

나.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기준의 범위내에서 예산 편성

다. 일기중 1번 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의 국외여행 자체

라. 실사위원회 민간인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운영

붙임 행정자치부 관련공문 사본 1부. 끝.

성 남 시

